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3,717,130	21,411,514
일반회계	625,599,998	18,768,000
특별회계	88,117,132	2,643,514
공기업특별회계	73,332,683	2,199,9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235,233	1,027,05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097,450	1,172,924
기타특별회계	14,784,449	443,5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41,812	43,254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587,823	17,635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8,148,000	244,440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3,837,270	115,118
지하수특별회계	769,544	23,08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12,71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